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- 224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22호, 2024.10.29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4년 10월 30일
보건복지부 장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Ⅲ.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'희소·필수 치료재료 (COPERNIC)'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목	세부인정사항
희소·필수 치료재료 (COPERNIC)의 급여기준	뇌혈관용 풍선카테터인 'COPERNIC'는 희소·필수 치료재료로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 - 아 래 - 가. 해당코드 - J8037010 나. 사용목적

	- 뇌경막동정맥루 색전술 및 뇌동정맥기형 색전술에서 정맥(동)의 일시적 폐색이 필요한 경우
--	--

부 칙

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		비고
제목	세부인정사항	제목	세부인정사항	
Ⅲ.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		Ⅲ.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		
<u><신설></u>	<u><신설></u>	희소·필수 치료재료 (COPERNIC)의 급여기준	뇌혈관용 풍선카테터인‘COPERNIC’는 희소·필수 치료재료로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함. - 아 래 - 가. 해당코드 - J8037010 나. 사용목적 - 뇌경막동정맥루 색전술 및 뇌동정맥기형 색전술에서 정맥(동)의 일시적 폐색이 필요한 경우	(신설사유) 치료재료 신규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